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6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반영하고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확대
- 3자녀 이상 → 2자녀 이상(단, 최연소 자녀가 18세 미만)

나. 수강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 별표 3)

- 1~3등급 장애인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- (2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10. 27. ~ 11. 16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.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별표 3 중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장애인	50%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수강료 감면 기준 (제14조 관련)		
유형별 구분	할인율	대상 및 내용
수급자	50%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국가유공자	50%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장애인	50%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달성군민	20%	달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



## 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. 단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.

### [별표 1] 장애인의 장애 정도(제2조 관련)

#### 1. 지체장애인

가.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

##### 1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가)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
- 나)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
- 다)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(Chopart's joint)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라)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
##### 2)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- 가)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
- 나)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
- 다) 한 손의 셋째손가락,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- 라)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(lisfranc joint)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
- 마)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

- 이하생략 -